

제2610호
2018. 11. 7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편집인: 공 보 실 장 신 선 애
전화: 3396-4952
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| | |
|---|------|
| 선 | 기관의장 |
| 람 | |

구 보

● 고 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2018-118호 :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| 2 |
| 제2018-119호 :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| 3 |
| 제2018-120호 :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| 4 |
| 제2018-121호 : 제3종 시설물의 지정고시 | 5 |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2 / FAX.(02)3396-9022/3
-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공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람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118호

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11월 7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| 대상 시설물 | | | 지정(해제) 사유 | 안전점검·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| 비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---|----|
| 시설물 명칭 | 소재지 | 관리주체 | | | |
| 정동제일교회 | 정동길 46 | 정동제일교회 |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 지침(국토부고시 제2018-45호) 별표 31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 2018년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시 C등급으로 판정되어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함 | 관리주체(소유자)는 1.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 도서를 제출 2.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에 결과 제출 3.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·보강 시행 시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제출 | |
|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| 세종대로21길 15 |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| | | |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119호

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구 신축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11월 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| 종전주소 | 도로명주소 | 도로명주소 고시일 |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| | 도 로 명 고시일 | 도 로 명 부여기준 |
| 필동2가 129 |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66 | 2018.11.07 | 필동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|
| | | 2010.05.26. | 행정구역 명칭 반영 |
| 신당동 233-11 |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70-1 | 2018.11.07. | 다산로39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|
| | | 2010.06.30. |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|
| 황학동 1776 |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7길 60-15 | 2018.11.07. | 난계로17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|
| | | 2010.06.30. | 난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|
| 신당동 403-18 |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91 | 2018.11.07. | 청구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|
| | | 2011.01.27. | 옛 지역명칭 인용 |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120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 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11월 7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| 연번 | 도로명주소 | 지번주소 | 폐지일자 | 폐지사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1 |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0길 12-3 | 서울특별시 중구 목정동 28-7 | 2018.11.07. | 건물말소 |
| 2 |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91 |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3-18 | 2018.11.07. | 건물말소 |
| 3 |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89-4 |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3-18 | 2018.11.07. | 건물철거 |
| 4 |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66 |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129 | 2018.11.07. | 건물말소 |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121호

제3종 시설물의 지정고시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11월 7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| 대상 시설물 | | | 지정 사유 | 안전점검·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|----|
| 시설물 명칭 | 소재지 | 관리주체 | | | |
| 조00, 유00 |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128-2 | 조00, 유00 | <p>시설물의안전및 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 (국토부고시 제2018-45호) 별표31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.</p> <p>2018년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결과 C등급으로 평가되어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 필요</p> | <p>관리주체께서는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, 상/하반기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* 신규 지정·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.</p> <p>※ 제3종시설물 지정·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| |